

소방법 시행령 개정령

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7월28일 공포되었다.

이중 본협회 회원사와 관련된 중요 부분 만 발췌하여 게재하기로 한다.



제 2 장 제 6 조 [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]

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[별표 2]와 같이 한다.

제 9 조 [방화관리자의 선임] 제 1 항

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[별표]의 1급 방화관리 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(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있지 아니한 특수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-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②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자격

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(제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에 한한다)

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·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(이하 “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”라 한다)로 선임된 사람(가연성가스를 저장·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)

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⑥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⑦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[별표]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

1. 1급 방화관리대상물

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

㉡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·무창층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

㉢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 1개 층의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

㉣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. 다만,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.

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를 두는 위험물제조소 등

㉥ 가연성가스를 500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


법 제9조 제1항 [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]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 대상물로 구분한다.



2. 2급 방화관리대상물

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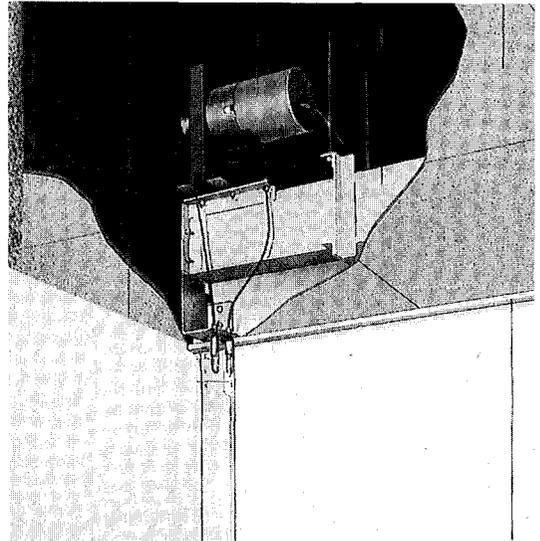
㉠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

㉡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

㉢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

㉣ 위험물제조소 등

㉤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


※즉, 개정전에는 방화관리자의 인원 등으로 규제했었지만 금번 개정령은 [별표]와 같이 면적 등으로 규제된 것이다.

한편 서울시 소방본부의 업무지침서에 의하면 공사중인 경우에도 방화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.